

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

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대상으로 반드시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.

과거에는 연구실에서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행정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연구자분들께서 연구진행의 편의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산학단에서 본 신청접수를 개선하여 온라인으로 대리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고자합니다.

1. 관련법령 (별도첨부)

가. 제37조[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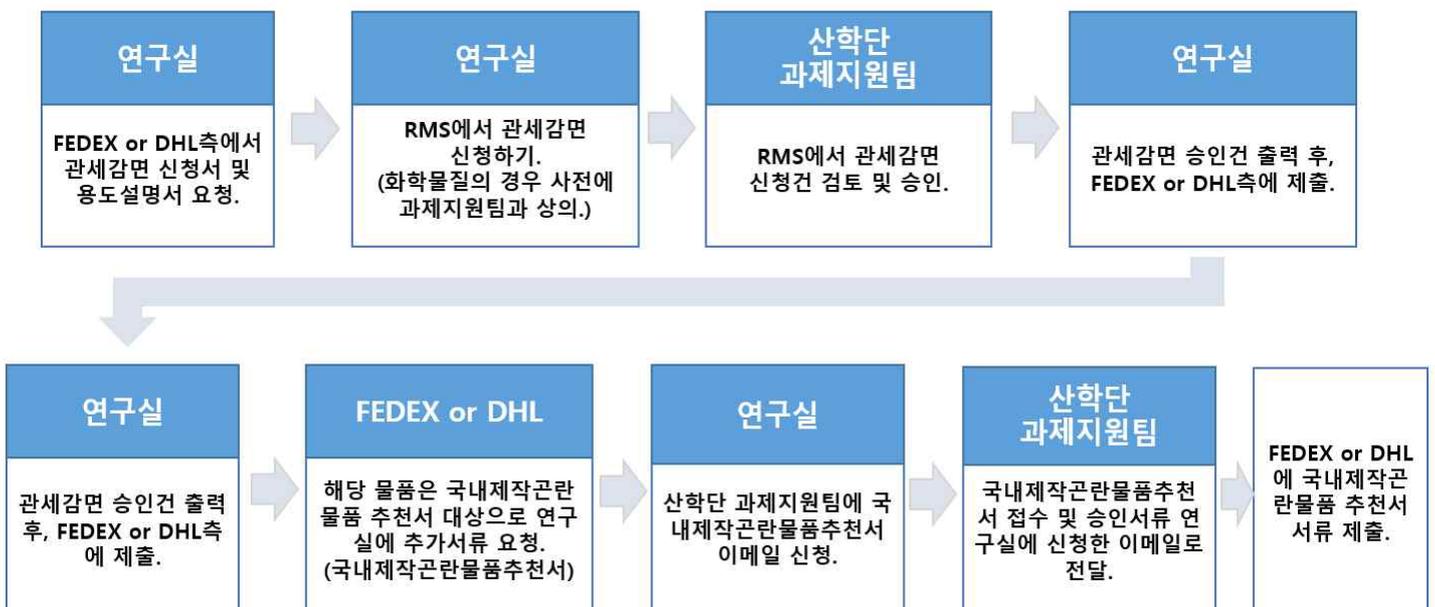
1)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②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.

-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.
- 위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.

2. 신청 절차

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 신청 절차 안내



3.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

가.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1부.

[*HSK 코드번호는 관세청 국번없이 125로 전화하시어 확인하기 바랍니다.]

나. 용도 설명서 1부.

다. 카탈로그 혹은 설명서 1부.

라. 제출방법 : 위 서류를 다운로드 하시어,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관세감면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.

[E-Mail : zhaowei7321@yonsei.ac.kr , 담당자 이유진(내선:5181)]

마. 이메일 신청시 필수 기입사항

- ① 과제번호
- ② 연구책임자명
- ③ 해당 신청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[신청인 본인연락처]
- ④ 관세감면 신청 번호
- ⑤ 인보이스 1부
- ⑥ 필요서류 반드시 첨부

감사합니다.

